

2020년도 제5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
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2020년도 제5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1월 11일

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 필기시험 일시 : 2020. 11. 21.(토) 10:00 ~ 11:00 / 12:00

시험종류	직 급	직렬(직류)	시험시간	비 고
경력경쟁	연구사	· 학예연구(학예일반)	10:00~11:00 (60분)	3과목
		· 수의연구(수의)		
		· 해양수산연구(해양환경)		
		· 해양수산연구(수산양식)		
		· 보건연구(공중보건)		
		· 환경연구(환경)		
		· 기록연구(기록관리)	10:00~12:00 (120분)	6과목

2

직급/직렬(직류), 임용예정기관, 시험장소

시험장	직급/직렬(직류)	임용예정기관 (응시번호)	배정 인원	시험장소	
				학교명	소재지
계			500		
제1시험장 (나주매성 중학교)	연구사/학예연구 (학예일반)	여수 88020001 ~ 88020016	16	나주 매성중학교 (061-320 -7600)	전남 나주시 쌍산1길 19
		고흥 88090001 ~ 88090006	6		
		전남 88230001 ~ 88230038	38		
	연구사/수의연구 (수의)	전남 90230001 ~ 90230001	1		
	연구사/해양수산연구 (해양환경)	전남 91230001 ~ 91230027	27		
	연구사/해양수산연구 (수산양식)	전남 92230001 ~ 92230076	76		
	연구사/보건연구 (공중보건)	전남 93230001~ 93230096	96		
제2시험장 (나주매성 고등학교)	연구사/보건연구 (공중보건)	전남 93230097 ~ 93230144	48	나주 매성고등학교 (061-320 -7600)	전남 나주시 쌍산1길 19
	연구사/환경연구 (환경)	전남 94230001 ~ 94230182	182		
	연구사/기록연구 (기록관리)	곡성 89070001 ~ 89070007	7		
		고흥 89090001 ~ 89090003	3		

1. 직류별·임용예정기관별·응시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시고, 시험 전일까지 교통편 및 소요시간 등을 확인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하여 필기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2. 지정된 시험장소 및 좌석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실 응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.
3.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.
 - 응시표 출력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
2020. 11. 11.(수) 09:00 ~ 12. 10.(목) 18:00까지 출력 가능
 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(주민등록번호 기재) 중 하나 지참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 -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수험생은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, 답안지에는 원서접수 당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4. 수험생은 시험당일 09: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입실할 수 없습니다. (시험 당일 08:00부터 시험실에 입실 가능합니다.)
 - 시험시간 관리는 수험생 책임이며, 종료시간 예고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손목시계 등을 통하여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계산·통신기능 등이 있는 시계는 사용 불가)
5. 답안지의 모든 기재(표기)사항은 『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』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(사인펜에 “컴퓨터용”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 - ※ 답안지에 수성사인펜, 연필, 일반 필기구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6. 답안지 채점은 OMR판독기기가 판독한 결과대로만 채점되므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이 아닌 수성사인펜을 사용하거나, 이중표기 또는 연필·볼펜 등으로 덧칠 표기하는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7.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“●”로 표기 하여야 하며, 수험생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 (단, 표기한 부분을 긁는 행위는 안되며 수정액·수정스티커 등은 사용금지)

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,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■■■■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8.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순서는 직급/직렬(직류)별로 반드시 시험문제책 표지의 시험과목 순으로 표기 하여야 합니다.

9. 시험문제책은 비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

10.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(휴대폰, 스마트워치, 무선호출기, MP3, PMP, 이어폰 등), 전산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
-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으로 정한 다음의 행위
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-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

11. 「**가산대상자격증 소지자**」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(11. 20.)까지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
☞ 필기시험 전일(11. 20.)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으며,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

12.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, 통신장비(휴대폰 등)와 전산기기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는 시험시작 전에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으로 내 놓아야 하며,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.

13. 시험종료 후에는 절대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,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하고 당해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14. **기록연구 직렬**은 지정된 시간에 **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**합니다. 다만, 본인확인 및 답안작성 등 시험진행 상 시험시작 후 30분 이후부터 시험종료 20분전까지만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

- 화장실 사용 전 입구에서 휴대전화, 부정자료 등 소지에 대해 검색하며, 화장실 사용 전·후에 화장실 내부에 기재사항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.

- 휴대전화 및 시험과 관련된 부정자료 등 소지, 화장실내에서 시험관련 기재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.

※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시험을 정지 무효로 하고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

- 화장실 사용 시 이동시간과 소지품 검색 등에 일정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포함한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신 분은 조용히 손을 들어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고 이동시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 중 퇴실 또는 지정시간 외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이 불가하며 복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시험시행본부에 대기하였다가 시험 종료 후 귀가하여야 합니다.

- 시험 중 수험생 이용 화장실로 사전 지정된 화장실 문에 부착된 봉인을 허가 없이 훼손할 경우,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.

※ 시험 시간이 짧은 **3과목 직렬(학예연구·수의연구·해양수산연구·보건연구·환경연구)**은 화장실 사용이 불가합니다.

15. 시험장 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하고, 수험생이 아닌 외부인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시험장에는 주차장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시험장 진입로에는 교통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시험장 인근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 코로나-19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협조사항

1. 코로나-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자가격리자는 사전에 신청한 응시자에 한하여 일반 시험장이 아닌 별도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 단, 별도시험장까지는 반드시 자가용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관할보건소 등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- 신청기간 : 11. 12.(목) 09:00 ~ 11. 20.(금) 18:00
 - 제출서류 : 자가격리자 시험 신청서(붙임), 격리통지서 사본
 - 제출방법 : FAX(061-286-4749) 또는 이메일 송부(thinzizy@korea.kr)
 - ※ 자가격리 신고자 중 격리해제된 경우 일반시험실에서 시험 실시
2. 시험장 입실 시 발열 등 유증상자는 일반시험실이 아닌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예비실에서만 응시할 수 있고, 퇴실은 시험감독관 지도하에 타 시험실 수험생이 모두 퇴실이 완료된 이후 가능합니다.
3. [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](참고)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, 손소독 및 발열검사,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4.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, 손수건,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수시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철저히 개인위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5. 시험장 입장 이후 발열,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 시 즉시 시험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모든 수험생은 시험 응시 후 14일 동안 호흡기 증상이 발생시에는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 1339에 문의하여야 합니다.
6. 안전한 시험장 관리를 위해 시험실 입실 시간은 08:00 이후 가능합니다.

<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수칙 >

- 마스크 착용하기
-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
-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
-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 만지지 않기
- 발열,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
-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) 또는 보건소 상담

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: 2020. 12. 1.(화)

※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전라남도 홈페이지(www.jeonnam.go.kr) 「시험정보」란에 게시합니다.

6 시험관련 문의 :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 (☎061-286-3371~6)

〈코로나19 대응 수험생 행동수칙〉

- ▼ 시험장 방역 및 수험생 위생관리를 위해 모든 시험실은 08:00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.
- ▼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, 개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
 - 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- ▼ 발열(37.5도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장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대기시간 등에도 다른 수험생과 1.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▼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,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.
- ▼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, 덧신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- ▼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중 창문 등을 상시 개방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고려하여 양해바랍니다.
- ▼ 시험장 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(코입 노출 금지)해야 하며,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▼ 퇴실 시 수험생 밀집으로 인한 감염예방을 위해, 저중부터 순차적으로 퇴실할 예정이오니 수험생들은 해당 시험실에서 감독관 통제 하에 질서있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.